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

활 동 계 획 [안]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목 차

I. 특위 구성 및 운영현황	1
1. 구성 개요	
2. 활동 대상기관 및 분야(사무범위)	
3. 구성이유	
4. 중점 활동 방향	
5. 행정사항	
II. 주요 활동계획	3
1. 관련기관 업무 보고 청취	
2.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활동	
3.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	
5.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지정 타 지자체 방문 및 현지시찰	
6. 타 지자체 첨단전략산업 지원 관련 동향 파악 및 대응	
7. 언론·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8. 특위 활동을 위한 추가 필요사항 결정	
III. 세부 활동계획	5
IV.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위 위원 명단	6
V. 기타 참고 자료	7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	

I 특위 구성 및 운영현황

1. 구성 개요

- 명 칭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 위 원 수 : 11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9) ※ IV. 위원 명단 참조
- 활동기간 : 2024. 9. 10. ~ 2025. 9. 9.(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제10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13조(부위원장)

2. 활동 대상기관 및 분야(사무범위)

- 기 관 : 국회,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 분 야 : 첨단전략산업 지원 관련 사무 일체

3. 구성 이유

- 정부는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에너지, 방위산업 등 첨단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고도의 기술·집약적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관련 산업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내 유일 RE100 실현이 가능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새만금에 유치하였고 25개에 달하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로부터 총 9조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으며 관련 전후방 연관기업만도 70여 개사에 달하면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와 부품기업의 집적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지역의 강점인 그린바이오(농업·식품)에 이어 레드바이오(의료·제약)까지 바이오 영역을 확대하고 특히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오가노이드(장기 유사체) 중심의 레드바이오통 발전시켜 전북 산업생태계의 변화 및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신성장동력 에너지인 수소에너지 및 반도체 산업, 방위산업 등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전북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을 구현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첨단전략 산업 생태계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경제 규모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4. 중점 활동 방향

- 중앙부처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 동향 파악
- 첨단전략산업 분야별 타 지자체 추진상황 파악 및 현지 시찰
- 첨단전략산업 분야별 특화단지 지정 파급효과 분석
-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활동
- 정치권과 연대한 특화단지 지정 추진활동 전개
- 타 지자체 동향 파악 및 언론 대응 등

5. 행정 사항

- 의회사무처 부서별 협조 사항
 - 총무담당관실 : 의정활동 예산 및 차량 지원 등
 - 의정홍보담당관실 : 언론기관 홍보, 활동사진 촬영 지원 등
 - 의사담당관실 : 속기 및 기록관리 지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특위활동 전반 사항 지원
 - 전문위원(1명), 경제산업건설팀장(1명), 직원(7명)

Ⅱ 주요 활동계획

1. 관련기관 업무보고 청취

- 보고시기 : 2024. 12. 13.(금)
- 보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미래첨단산업국 등)
- 참석대상 : 특위 위원, 미래첨단산업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관련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
 - 정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동향 및 추진 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

2.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활동

- 추진기간 : 2024. 9. 10. ~ 2025. 9. 9.(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 활동대상(설득대상)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전북 관련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연고),
 -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등)
- 주요내용
 - 중앙정치권과 연계하여 전북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 활동

3.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 추진기간 : 2024. 9. 10. ~ 2025. 9. 9.(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전략 및 대응 방안 마련 등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

- 추진기간 : 2024. 9. 10. ~ 2025. 9. 9.(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 대상기관 : 국회, 정부부처 등
- 주요내용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

5.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지정 타 지자체 방문 및 현지시찰

- 추진기간 : 2025. 3월 또는 4월(2박3일)
- 방문기관 : 충북 오송(바이오), 충북 오창(이차전지)
- 주요내용 : 타 지자체 특화단지 운영 현황 청취 및 현지시찰 등

6. 타 지자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동향 파악 및 대응

- 추진기간 : 2024. 9. 10. ~ 2025. 9. 9.(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 주요내용 : 첨단전략산업 관련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동향 파악 등

7. 언론·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 추진기간 : 2024. 9. 10. ~ 2025. 9. 9.(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 추진방법 : 언론보도, TV·라디오 방송 출연, 기고, SNS 등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국회 방문, 특위 활동 사항 적극 홍보 등

8. 특위 활동을 위한 추가 필요사항 결정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사무 중 활동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무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Ⅲ 세부 활동계획

일 정	활 동 내 용	비 고
2024년 10월 ~ 12월	○ 특위 제1차 회의(10. 8.)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특위 제2차 회의(12. 13.) - 특위 활동계획 수립·채택 등 - 관련기관 업무보고 청취(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관련 동향 및 추진 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	
2024년 10월 ~ 2025년 8월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활동 - 중앙정치권과 연계하여 전북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 활동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타 지자체 방문 및 현지시찰 - 타 지자체 특화단지 운영 현황 청취 및 현지시찰 등 ○ 타 지자체 첨단전략산업 지원 관련 동향 파악 및 대응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동향 파악 ○ 언론·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국회 및 정부부처 방문, 타시도 벤치마킹 등 특위 활동사항 적극 홍보	
2025년 8월 중	○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2025년 9월 중	○ 특위 제3차 회의 -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Ⅳ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자원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11명 】

(가나다순)

성명		소속위원회	전화번호	비고
	김동구 위원장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산2선거구)		
	권요안 부위원장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2선거구)		
	강태창 위원	기획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산1선거구)		
	김대중 위원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익산1선거구)		
	김만기 위원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익산1선거구)		
	김이재 위원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주4선거구)		
	나인권 위원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제1선거구)		
	서난이 위원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주9선거구)		
	염영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읍2선거구)		
	이병도 위원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주1선거구)		
	이수진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V 기타 참고자료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동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78
----------	-----

발의연월일 : 2024. 7. .

발 의 자 : 김동구 의원

찬 성 자 : 김희수 · 장연국 · 정종복

김이재 · 이수진 · 진형석

이병도 의원(7명)

1. 주 문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에너지, 방위산업 등 첨단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고도의 지식·기술집약적인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 확보를 위해 관련 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내 유일 RE100 실현이 가능한 새만금에 이차전지특화단지의 유치와 함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반도체·바이오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및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명 칭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 위 원 수 : 11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 위원 선임 시점부터 1년
- 대상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사무범위 : 첨단전략산업 관련 사무 일체

2. 제안이유

- 가. 정부는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에너지, 방위산업 등 첨단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고도의 기술·집약적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관련 산업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나.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내 유일 RE100 실현이 가능한 이차전지특화단지를 새만금에 유치하였고 25개에 달하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로부터 총 9조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으며 관련 전후방 연관기업만도 70여 개사에 달하면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와 부품기업의 집적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다. 지역의 강점인 그린바이오(농업·식품)에 이어 레드바이오(의료·제약)까지 바이오 영역을 확대하고 특히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오가노이드(장기 유사체) 중심의 레드바이오를 발전시켜 전북 산업생태계의 변화 및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라. 신성장동력 에너지인 수소에너지 및 반도체 산업, 방위산업 등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전북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을 구현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마.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경제 규모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3. 활동계획

- 가. 첨단전략산업 기업 유치 및 입주기업 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 나.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공청회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 다. 정치권과 연대하여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활동 전개
- 라. 지속 성장이 가능한 첨단전략산업생태계 조성 활동
- 마.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법·조례 제·개정 활동
- 바.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활동

4. 참고사항

- 가. 세부추진 계획 및 소요예산 : 별도 수립 시행
-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2. 관련 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하여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제안이유, 명칭, 활동기간, 위원수 및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의 종료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⑦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별도의 조항을 둔다.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 의장이 선출되는 날까지 그리고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부위원장 1명,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요청하여 선임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 제2항에 따른다.

제13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 ② 제1항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